

경기기후환경협의체

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206호

경 기 환 : 제 1 호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환경 및 ESG담당자

제 목 : 「경기기후환경협의체」 참여기업 모집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환경배출업소(64,820개소)중 화성시 환경배출업소는 14,086개소(약 22%)로, 경기도 중 가장 많은 환경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들의 예방 및 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3.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 관내 대기업(기아(주) 오토랜드 화성,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및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을 주축으로 「경기기후환경협의체」가 출범되어 화성시 민간 주도 자발적 기업 참여형 협의체가 설립됩니다.
4. 해당 협의회는 경기도/화성시 환경배출사업장 자율 점검 강화 등 환경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동 활동에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내 배출업소 혹은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모집대상 : 환경배출업소 및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

나. 모집기간 : ~ 25. 3. 31.(월)

다. 접수방법 : 신청서 이메일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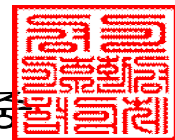
라. 협의체 기능

- 기후, 대기 및 수질 등 환경 관련 기업 의견 취합 및 정책 반영 요청 공식 창구
- 환경 점검시 단속 적발 사항 및 사례 공유로 사전 대비
- 경기도 및 화성시의 환경 관련 지원사업 설명회 및 분기별 세미나 개최
- 자율점검 강화 교육 및 자율점검권 우선 부여 등

※ 해당 협의체는 비영리단체로, 정관에서 정한 연회비 50만원이 발생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후환경협의체 담당 직원 민혜민 (031-350-7942)게 문의 바랍니다. 끝.

경기기후환경협의체 회장 윤호중



담당자 : 민혜민
일 자 : 25. 2. 3.

상근부회장 : 구대완
031-350-7942

회장 : 윤호중
minhyemin@korcham.net

경기기후환경협의체 가입 안내

□ 경기기후환경협의체 개요

- 목 적: 화성시 관내 기업체들의 기후환경 역량 강화 및 기후행동 실천 촉진
- 성 격: 민간 주도형 자발적 참여 협의체 (비영리단체, 국내 최초 설립)
- 기 능

- 기후, 대기 및 수질 등 환경 관련 기업 의견 취합 및 정책반영 요청 공식 창구 역할
- 환경 점검 시 단속 적발사항 및 사례 공유로 사전 대비
- 경기도·화성시의 환경 관련 지원사업 설명회 및 분기별 세미나 개최
- 자율점검 강화 교육 및 자율점검 대상 업소 선정 지원 등

※화성시 환경배출업소는 약 14,000개소(경기도의 22%, 도내 1위)

□ 협의체 가입 기업 특전

- 자율점검 지원 등 회원 기업의 환경 권익 보호
- 도·시정 환경 관련 지원사업 우선 안내
- 환경 정책 포럼 및 교육 우선 지원
- 우수기업 표창 예정

□ 협의체 참여기업 모집 안내

- 모집대상: 환경배출업소 및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
- 모집기간: 2025.2.28(금)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7940info@gmail.com)
- 연 회 비: 50만원 발생(참여기업 부담 감소를 위해 협의 운영비 등 대기업 출연)
- 문의사항: 경기기후환경협의체 담당 직원 민혜민(☎031-350-7942)

※깨끗한 경기도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체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기기후환경협의체

『경기기후환경협의체』 참여 신청서				
기업정보 (대표자)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휴대전화		팩 스	
	주 소			
참여자 (담당자) 정보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E-Mail	
상기 기업은 경기기후환경협의체에 참여 신청하며, 신청기업 정보가 협의체 홍보 및 안내 등 활용되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을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연락처 등)가 관련 업무 처리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 . . 지원기업 : (인) 경기기후환경협의체 귀중				

붙임 3.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분 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시설 미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종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